##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5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황운하·강득구·강민정

김승원 · 김윤덕 · 박홍근

송옥주 · 양정숙 · 오영환

유정주 • 윤관석 • 윤준병

이규민 • 이성만 • 이워택

장경태 · 정성호 · 정태호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27만 9,082건, 2018년 2 4만 8660건, 2019년 24만 564건으로 매년 가정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 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항에 따른 출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그에 대한 민사책임과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출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
동 등) ① ~ ⑥ (생 략)	동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제2항에 따른 출입으로 다
	른 사람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
	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사법
	경찰관리에게 고의 또는 중과
	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민
	사책임과 사상에 대한 형사책
	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u>&lt;신 설&gt;</u>	⑧ 제2항에 따른 출입으로 다
	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
	생하게 한 경우 가정폭력행위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u>있다.</u>
제20조(벌칙) ①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

2. · 3. (생략)

②·③ (생 략)

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u>자</u>

2.·3.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u><</u>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